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을 이유로 현장실습 거부·중지권 부여 등>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32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	9
참고 1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의 「근로기준법」 준용 조문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18.
3. 회부연월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조의6(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①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한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현장실습산업체와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및 조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¹⁾는 “현장실습”을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법 제7조²⁾는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
-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지원체계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현장실습계약 체결,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이행, 안전교육 실시, 동법 제24조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동법 제9조의4³⁾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27조⁴⁾는 현장실습 계약⁵⁾ 중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과태

-
- 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가. 현장실습 기간, 나. 현장실습 방법, 다. 담당자 배치, 라. 현장실습 수당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 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료를 부과하며,

동법 제24조⁶⁾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의 준용을 규정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에 더해 최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2025.3.18.)⁷⁾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체 중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제8조의2) 보다 우수한 환경의 현장실습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생들에게 안전교육에 더하여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제9조의5)하도록 개정하여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음.

6) 참고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의 「근로기준법」 준용 조문

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의2(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법률 제20786호, 2025.9.19. 시행]

이렇듯 현행법령이 현장실습 시 직업교육훈련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그간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2003년 이래로 수 차례에 걸쳐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해 개선방안 및 보완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던 전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사건, 여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건 등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노동착취, 인격침해 등의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고,

<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권익침해 현황 >

연도	지도점검(순회지도 포함) 결과										안전사고 건수			계
	지도점검	지도점검 평균횟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 업무	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근무(실습) 기간 초과	야간(휴일) 근무실시	계	산재 처리	산재 미처리	계	안전사고+ 권익침해
2016	77,915	1.2	5(5%)	3(3%)	14(13%)	17(16%)	12(11%)	55(52%)	-	106	16	4	20	126
2017	84,817	1.8	1(2%)	0(0%)	3(10%)	4(13%)	15(47%)	9(28%)	-	32	15	5	20	52
2018	39,801	1.8	0	0	0	0	1(25%)	2(50%)	1(25%)	4	3	0	3	7
2019	45,727	1.7	0	1(2%)	1(2%)	6(13%)	8(18%)	23(51%)	6(13%)	45	6	2	8	53
2020	50,576	1.9	0	4(15%)	0	5(19%)	9(35%)	5(19%)	3(12%)	26	5	1	6	32
2021	64,699	2.3	0	1(3.6%)	0	8(28.6%)	5(17.9%)	12(42.9%)	2(7.1%)	28	6	3	9	37
2022	35,797	1.8	0	6(27.2%)	0	5(22.7%)	4(18.1%)	5(22.7%)	2(9%)	22	7	16	23	45
2023	34,183	2.0	0	1(6.6%)	3(20%)	1(6.6%)	6(40%)	3(20%)	1(6.6%)	15	12	13	25	40

자료: 교육부

현장실습 지도·점검과정에서 권익침해 건수도 상당수 확인되는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⁸⁾이라는 점 때문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현장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여 개정안의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현재 현장실습 중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을 저해할 위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교사가 학교전담노무사와 협력하여 실습중단, 복교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⁹⁾를 취하고 있는바, 개정안을 입법화함으로써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임.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중단할 수 있는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 뿐만아니라 학부모, 현장실습산업체장, 직업교육훈련기관장 등 현장실습 관련자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매뉴얼 등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도 관련 법령과 「직업계교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교육부고

8) 강문식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 pp3~4, 국가인권위원회, 2022.12.6.

9)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한국장학재단, 2025년 개정 직업계교 현장실습 공통 매뉴얼(학교용), p112. 2025.4.30.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법률 제 20786호, 2025.9.19. 시행]

시 제2018-165호)¹⁰⁾ 등을 기준 삼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안전보건,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덧붙여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직업교육훈련생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제9조의6(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① ~ ③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및 조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제9조의6(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u>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으로</u> -----.

문 의 처

02)6788-5193

1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고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의 「근로기준법」 준용 조문

「근로기준법 조문」		내용
본문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폭행, 협박, 감금 등 수단으로 근로 강요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근로자 폭행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또는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 금지(법률에 따르는 경우 제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제54조(휴게)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제65조(사용금지)	임산부(임신 중 및 산후 1년 이내 여성) 및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업종에 사용 금지 등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여성 및 18세 미만자는 갱내 근로 금지
	제73조(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직장내 괴롭힘 사실 신고 등 조치
벌칙	제107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09조제1항	제36조, 제72조, 제73조의3제6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100조제1호	제10조,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제1호	제6조, 제73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제11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